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만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17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5일

발 의 자: 유만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경훈,
김영철, 김재진, 김지향,
김태수, 남궁역, 남창진,
박 석, 박성연, 박중화,
박춘선, 소영철, 윤기섭,
이봉준, 이영실, 이원형,
최진혁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공원 등을 조성 후 공원관리청으로 이관 시 사업시행자와 공원관리청이 준공검사를 시행하여 시공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바, 점검해야 할 항목에 토양상태를 포함하는 등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여 도시공원 조성 시 환경오염 및 훼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, 관리 이관 후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원관리청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공원·녹지에 대하여 계획의 이행을 확인하고,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원·녹지에 대한 사전점검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함(안 제31조제1항 신설)
- 나. 공원·녹지 공간의 배치, 시설물·식재 형태, 위치, 성능 등의 적정성 및 설계·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사항(안 제31조제1항제1호 신설)
- 다. 공원·녹지 조성 시 사용된 성토재료 등 자재(건설폐기물 등 환경오염 유발 물질의 포함여부 등)에 대한 검사(안 제31조제1항제2호 신설)

라. 공원·녹지의 토양 상태(생육 적합성 등)에 대한 조사(안 제31조제1항제3호 신설)

마.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, 소유권 이전, 유지관리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(안 제31조제2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, 환경정책기본법 , 토양환경보전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제32조 및 제33조로 하고,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(검사 등) ① 공원관리청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공원·녹지(시설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계획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공원·녹지에 대한 사전점검 및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.

1. 공원·녹지 내 공간의 배치, 설치된 시설물·식재 등의 형태, 위치, 성능 또는 상태 등의 적정성 및 설계·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점검
 2. 공원·녹지의 조성 시 사용된 성토재료 등 자재(건설폐기물 등과 같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의 포함 여부 등)에 대한 검사
 3. 공원·녹지의 토양 상태(생육 적합성 등)에 대한 조사
 4.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기부채납된 공원·녹지에 대한 점검 및 준공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②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, 소유권 이전, 유지관리 등의 절차·방법 등에

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31조(검사 등) ① 공원관리청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공원·녹지(시설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계획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공원·녹지에 대한 사전점검 및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공원·녹지 내 공간의 배치, 설치된 시설물·식재 등의 형태, 위치, 성능 또는 상태 등의 적정성 및 설계·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점검</u> <u>2. 공원·녹지의 조성 시 사용된 성토재료 등 자재(건설폐기물 등과 같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의 포함 여부 등)에 대한 검사</u> <u>3. 공원·녹지의 토양 상태(생육 적합성 등)에 대한 조사</u> <u>4.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기부채납된 공원·녹지에 대한 점검 및 준공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</u>

<p><u>제31조 · 제32조</u> (생략)</p>	<p><u>한 사항</u></p> <p><u>②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, 소유권 이전, 유지관리 등의 절차 ·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</u></p> <p><u>제32조 · 제33조</u> (현행 제31조 및 제32조와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공원 등을 조성 후 공원 관리청으로 이관시 사업시행자와 공원관리청이 준공검사를 시행하여 시공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바, 점검해야 할 항목에 토양상태를 포함하는 등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